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88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정혜경 · 손 술 · 전종덕
윤종오 · 최혁진 · 김 윤
임미애 · 이주희 · 황운하
김재원 · 차규근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당의 당선으로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선거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였음. 선거결과 시범실시 선거

구에서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늘어난 효과를 확인하였음.

시범실시 효과를 반영하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안 제26조),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고(안 제22조 및 제23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 배분 요건을 5%에서 3%로 하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심을 충실히 답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0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10으로”를 “20으로”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10으로”를 “20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1명으로”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 이상 4인 이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5”를 “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 ③ (생 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100分の <u>10으로</u>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20으로</u> ----- ----- ----- -----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② (생 략)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의 100분의 <u>10으로</u>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20으로</u> ----- -----.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市·道議會議員地域選舉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 ----- ----- ----- -----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명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
위원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인 이상 5인 이하로

② -----

3인 이상 5인
이하로-----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
위원선인의 결정·공고·통지)

